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2020.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급식지원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제6조)
- 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 제10조)
- 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 1,536백만원 반영 계획임.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12. 23. ~ 2020. 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담당관-4232, '19. 12. 10.)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담당관-4232, '19. 12. 10.)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3327, '19. 11. 7.)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3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농산물

5.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 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

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급

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지원

2.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3.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4. 도시락 배달

5. 부식 등 식재료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공급식 지원에 따른 현물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급식의 지원을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대로 통합지원센터에서 현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소관 부서의 장과 관할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소관 부서의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로 폐지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9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공공급식을 추진함으로써 군민 먹거리 보장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1,536,000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도비)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비	1,500,000	제1회추경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군비)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2개월)	20,000	제2회추경
공공급식 배송 인건비(군비)	공공급식 배송 인건비 운영(4명*2개월)	16,000	제2회추경

다. 재원조달 방안 : 2020년 제1·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연락처	(033) 330 - 13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536,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2,304,000
	통합지원센터 구축 (도비)	1,500,000					1,500,000
	통합지원센터 일반 운영비(군비)	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00,000
	공공급식 배송 인건 비(군비)	16,000	72,000	72,000	72,000	72,000	30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50,000					750,000
	보조금	750,000					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86,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554,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786,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554,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